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 12	
람	



제509호 2022. 2. 10.(목)

호					
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2년 2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711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육아나눔터" 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 2. "가족품앗이" 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 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 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 2. (조)부모·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 운영 지원

-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
 - 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2년 2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712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 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융자금 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전단 중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를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를 "융자수혜자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융자금 상환기관 연장)"을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기한"을 "상환기한 30일 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 란 중 성명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채무자 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하고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무대비표

혅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제1조(목적) ----- 「발전소주변지 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 이라 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제2조(용어의 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 3.----- 따라 ---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 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삭 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 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융자금 운영 〈삭 제〉 제7조(융자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절차) ① ~ ③ (생 략) ④융자금 신청 및 대출 (4)-----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
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u>월의 익</u>
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
<u>정에 따라</u>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
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② (생 략)

- ③용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u>용자수</u> <u>혜자와 연대보증인이</u> 상환책임을 진 다.
- 제10조(융자금 <u>상환기관</u> 연장) ①·② (생 략)
 -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 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u>납기한</u>까지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2.							
				· <u>달의</u>	다음	달	말일
	<u>까지</u>	융자	·기관	에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

3	<u>융자수혜자</u>
7}	

제10조<u>(융자금 상환기간 연장)</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상환기한 30일 전</u>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현행)

접수번호 제	<u>ō</u>					
	주민복	복지지원 사 역	업 자금	융자신	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건 경 현	주 소				(전화:)
신청금액(천원)			<u>Q</u> 0	도		
사업수입기간	□ 1년 ° □ 5년 °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이상		년 이내		
조 건	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 전출 시	는 즉시 융자	금 반환
발전소주변지 지원사업 자금-			시행령 제1	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덕	민복지지원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현행)
121		140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현행)

접수반	접수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	-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업자	
(1/3 t	주	소		등록번호	
신청급	금액(천	<u></u> 원)			
사업	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조 건 지원			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	시 융자금 반환
			시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자를 신청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	의하여 기업유치
			년	월 일	
신 ²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	류 :	기업	우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현행)
-----	--------	------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현행)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생년	월일	
근데또 6 근	주 소				채무자외	바 의관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대공	사업개요						
융자내용 -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자기간	년거	치	년상환	상환	방법	
	조사일자						
01=1 = 11=1	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사업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1 - 1 11/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고 성 군 공 보 공보 제509호 2022년 2월 10일(목)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접수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 (남/예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전화: 주 소 신청금액(천원) 용 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사업수입기간 □ 5년 이상 조 건 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인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남/예
주 소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주 소	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접수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						
시쳐이	성	경	(남/여)	사업자			
신청인	주 -	소		등록번호			
신청근	금액(천윣	실)					
사업	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조	조 건 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너명 또는 인)			
고성군	<u> </u>	ठे}					
첨부서	류: 기	업유	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변지	제6호서식]	(개저아)
	세6오세식1	내려면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ı	-3 3	. 3 . 3 63 43	
	성 명	생년월일	(남/여)
-			
	주 소	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2. 기타 구비서류: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안)

발급번호	ː 제	호
큰 ㅂ ㄴㅗ	- (')	-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명				생	년월일	(남, 여)
オイヤ	주 소						
사업내용	사업명				·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금		원	ਉ ਂ	자 일	
	융자기간	년거]치]	년상환	상흰	방법	
	조사일자						
0]=] = 1 = 1	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사업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1 (2 (1 11)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고							

-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①, 현장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혀 인

2022년 2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71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2명이며"를 "74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8명"을 "729명"으로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729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계	746	355	17	139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4급	4	4				
4~5급	1			1		
5급	43	18	3	5	3	14
6급 이하	661	329	14	101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 제2조(정원의 총수) ------원 정원의 총수는 <u>742명이며</u>,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746명이며-----

1_집행기관의 정원 : 729명

<u>1. 의회사무기구의 정원</u>: 17명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옵·면
총 계	742	355	14	138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1	351	14	112	40	194
4급	4	4				
4~5급	1			1		
5급	43	18	3	5	3	14
6급 이하	657	329	11	100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별표3]

0 6 6 7 7	166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옵·면
총계	746	355	17	139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4급	4	4				
4~5급	1			1		
5급	43	18	3	5	3	14
6급 이하	661	329	14	101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2년 2월 10일

고성군 규칙 제124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후>

기관 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6	355	17	139	41	194
정 무 직	1	1	_	_	_	_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일반직 4급 소계	4	4	_	_	-	_
서기관	1	1	_	_	_	_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_	_	-	-
일반직 4~5급 소계	1	_	_	1	_	_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	1	_	_	1	_	_
일반직 5급 소계	43	18	3	5	3	14
행정	_	_	_	_	_	_
의무	1	_	_	1	_	_
행정.사회복지	3	3	_	_	_	_
행정.공업.환경	1	1	_	_	_	_
행정.해양수산	_	_	_	_	_	_
행정.시설	4	2	2	_	_	_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_	_	_	_	_	_
행정.농업.시설	10	5	1	_	2	2
행정.시설.보건	_	_	_	_	_	_
행정.농업.해양수산	2	_	_	_	_	2
행정.농업.녹지	1	1	_	_	_	_
행정.농업.녹지.사회복지	1	_	_	_	_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_	_	_	1	_
행정.농업.사회복지	1	_	_	_	_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_	_	2	_	_
행정.농업.시설.보건	4	_	_	_	_	4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_	-	_	-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_	_	_	_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_	_	_	_	1
농업.농촌지도	1	_	_	1	_	-
농업.수의.농촌지도	1	_	-	1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_	_	_
행정.공업.시설	3	3	_	_	_	_
농업.녹지.시설	1	1	_	_	_	_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_	_	_	_
일반직 6급 소계	177	94	3	21	8	51
행정	20	18	2	-	_	_
세무	3	2	_	_	_	1
사회복지	2	2	_	_	_	_
시설	7	6	_	_	1	_

녹지	1	1	_	_	_	_
해양수산	2	2	_	_	_	_
환경	2	2	_	_	_	_
보건진료	2	_	_	2	_	_
운전	4	4	_	_	_	_
사무운영	_	_	_	_	_	_
선박항해운영	_	_	_	_	_	_
기계운영	_	_	_	_	_	_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_	_	_	_
행정.농업.방송통신	_	_	_	_	_	_
행정.농업	21	_	_	_	2	19
행정.전산	1	1	_	-	_	ı
행정.시설	24	22	1	1	2	_
행정.공업	1	1	-	-	_	_
행정.해양수산	3	3	_	_	_	_
행정.사회복지	11	8	_	_	_	3
행정.보건	1	_	-	1	_	_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_	_	_	_
농업.수의.농촌지도	1	_	_	1	_	_
농업.농촌지도	3	_	_	3	_	_
행정.세무	7	4	-	_	-	
행정.농업.전산	1	_	-	1	-	_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_	-	1	_	_
행정.농업.농촌지도	2	_	_	2	_	_
행정.농업.시설	5	1	1	2	_	1
행정.환경.공업	7	3	_	1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5	_	-	-	-	5
행정.농업.녹지	3	3	_	-	_	_
보건.간호.의료기술	5	_	_	5	_	_
행정.사회복지.보건	6	3	_	_	_	3
행정.사회복지.간호	2	_	_	_	_	2
행정.시설.보건	1	1	-	_	_	-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_	_	-	_
행정.농업.사회복지	6	_	-	-	-	6
행정.농업.시설.보건	1	_	_	_	_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_	-	-	_	2
행정.농업.세무	4	_	_	_	_	
행정.공업.시설	1	_	_	_	1	_
보건.간호	2	_	_	2	_	_
 반직 7급 소계	213	111	8	31	12	51
<u>행정</u>	40	28	6	_	2	4

농업	3	_	_	3	_	-
세무	3	3	_	_	_	_
시설	15	9	_	_	2	4
녹지	1	1	_	_	_	_
해양수산	3	3	_	_	_	_
수의	2	_	_	2	_	_
전산	_	_	_	_	_	_
방송통신	1	1	-	-	_	-
보건	2	_	_	2	-	_
간호	1	_	-	1	-	_
보건진료	4	-	-	4	-	_
환경	1	1	-	_	-	_
공업	2	1	-	_	1	_
사회복지	8	2	_	ı	-	6
의료기술	2	_	_	2	_	_
운전	6	3	1	1	1	_
속기	1	_	1	ı	_	_
사무운영	_	_	_	_	_	_
행정.농업	18	2	_	2	2	14
행정.전산	2	2	_	_	_	_
행정.시설	20	19	_	1	1	_
행정.공업	1	_	_	_	1	_
행정.환경	2	2	_	_	_	_
행정.해양수산	3	3	_	_	_	_
환경.공업	2	2	-	_	_	_
시설.방재안전	_	_	-	_	_	_
농업.녹지	1	1	_	_	_	_
시설.녹지	1	1	_	_	_	_
행정.사회복지	8	6	_	_	_	2
해양수산.시설	2	2	_	_	_	_
행정.보건	3	1	_	_	_	2
보건.약무	1	_	_	1	_	-
보건.간호	1	_	_	1	_	-
행정.세무	11	5	_	_	_	6
행정.농업.전산	2	_	_	1	_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_	-	3	_	_
행정.환경.공업	4	2	-	_	1	1
행정.농업.녹지	2	2	-	_	_	_
보건.간호.의료기술	7	_	_	4	_	3
행정.사회복지.보건	7	3	_	_	_	4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_	_	_	_
행정.시설.녹지	1	_	_	_	1	_

농업.수의.농촌지도	1	_	_	1	_	_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_	-	_
행정.농업.사회복지	2	_	_	_	_	2
행정.공업.시설	2	2	_	_	_	_
행정.농업.시설	6	3	-	3	_	_
행정.농업.시설.보건	2	_	_	_	_	2
일반직 8급 소계	189	81	3	42	12	51
행정	26	19	1	_	3	3
농업	2	_	_	2	-	_
세무	2	2	_	_	_	_
전산	1	1	_	_	_	_
공업	5	3	-	_	2	_
시설	12	4	-	_	_	8
해양수산	3	3	_	_	_	_
방송통신	1	1	-	_	_	_
보건	10	2	-	8	-	_
간호	5	_	-	5	-	-
보건진료	6	_	-	6	-	_
환경	1	1	-	_	_	_
사회복지	10	1	_	_	-	9
의료기술	5	_	_	5	_	_
운전	4	2	1	_	1	_
속기	1	_	1	_	-	_
전기운영	2	1	_	_	1	_
행정.농업	11	1	_	3	_	7
행정.전산	1	_	-	_	_	1
행정.시설	17	17	_	_	_	_
행정.환경	2	_	_	_	1	1
행정.해양수산	2	2	_	_	_	_
행정.공업	2	1	_	_	1	_
환경.공업	2	2	_	_	_	_
시설.방재안전	2	2	_	_	_	_
행정.사회복지	3	2	_	_	_	1
행정.보건	3	_	_	1	_	2
보건.간호	4	_	-	4	-	_
간호.의료기술	1	_	_	1	_	_
행정.세무	5	1	_	_	_	4
환경.해양수산	1	1	_	_		_
행정.농업.세무	1	_	_	_	_	1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_	_	1	_	_
행정.농업.사회복지	2	_	_	_	_	2
행정.농업.시설	6	3	_	1	_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_	_	-	_
행정.환경.공업	4	1	_	1	2	_
환경.공업.보건	1	_	-	_	1	_
행정.농업.녹지	2	2	_	_	-	-
보건.간호.의료기술	6	_	-	2	-	4
행정.사회복지.보건	8	3	-	-	-	5
행정.시설.보건	1	1	_	_	_	_
행정.농업.농촌지도	2	_	_	2	_	_
행정.농업.시설.보건	1	_	_	_	_	1
일반직 9급 소계	82	43	_	7	5	27
행정	8(3)	6(1)	_	_	_	2(2)
세무	1	1	_	_	_	_
시설	4	2	_	_	_	2
보건	1	_	-	1	_	_
사회복지	13	5	-	_	_	8
공업	1	_	_	-	1	_
녹지	1	1	_	-	-	_
운전	4	4	_	-	-	_
속기	_	_	_	_	-	_
사무운영	3	1	_	1	-	1
기계운영	1	1	_	_	-	-
행정.농업	3	_	_	2	-	1
행정.시설	10	8	_	_	2	_
행정.환경	1	_	-	-	-	1
행정.세무	1	_	_	_	_	1
시설.방재안전	1	1	_	_	_	_
행정.해양수산	2	2	_	_	_	_
행정.사회복지	5	2	_	_	_	3
행정.보건	2	1	_	_	_	1
보건.간호	1	_	_	1	_	_
행정.사서	1	1	_	_	_	_
방송통신.전산	1	1	_	_	-	_
행정.환경.공업	2	1	_	_	1	_
행정.농업.녹지	3	2	_	_	1	_
행정.사회복지.보건	6	1	_	_	_	5
행정.시설.보건	1	1	_	_	-	_
보건.간호.의료기술	2	_	_	2	_	_
행정.농업.사회복지	2	_	_	_	_	2
행정.공업.시설	1	1	_	_	_	_
전문경력관 소계	6	_	-	6	-	-
다군(농기계수리)	6	_	_	6	_	_
별정직 계	1	1	_	_	_	_
별정직 6급상당 소계	1	1	_	_	_	_

공보 제509호

고 성 군 공 보

2022년 2월 10일(목)

	비서요원	1	1	_	_	_	_
6	· - - - - - - - - - - - - - - - - - - -	4	2	_	1	1	_
6	· 연구사 소계	4	2	_	1	1	_
	기록연구	1	1	_	_	_	_
	학예연구	2	1	_	_	1	_
	농업연구	1	_	_	1	_	_
天	도직 계	25	-	_	25	_	_
天	I도관 소계	1	-	_	1	_	_
	농촌지도관	1	_	_	1	_	_
人	도사 소계	24	_	_	24	_	_
	농촌지도	24	_	_	24	_	_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혂 인

2022년 2월 10일

고성군 훈령 제471호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별표] (개정후)

□ 총괄(제2조 관련)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746	1	4	1	43	178	213	195	82	1	28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15	-	4	1	43	177	213	195	82	-	-
	서기관	1	_	1	_	-	-	_	_	_	_	-
	서기관.기술서기관	3	_	3	_	_	_	_	_	_	_	-
	행정	94	_	_	_	_	20	40	26	8	-	-
	세무	9	_	_	_	_	3	3	2	1	-	-
	전산	1	_	_	_	_	_	_	1	_	-	-
	사회복지	33	_	_	_	_	2	8	10	13	_	_
	공업	8	_	_	_	_	_	2	5	1	-	-
	농업	5	_	_	_	_	_	3	2	_	-	_
	녹지	3	_	-	_	-	1	1	-	1	-	-
	해양수산	8	_	_	_	-	2	3	3	_	-	-
	수의	2	_	_	_	_	_	2	-	_	-	-
	보건	13	_	_	_	_	_	2	10	1	-	-
	의무	1	_	_	_	1	_	_	_	_	_	-
	간호	6	_	_	_	_	_	1	5	_	-	-
	보건진료	12	_	_	_	_	2	4	6	_	-	-
	의료기술	7	_	_	_	_	_	2	5	_	-	-
	환경	4	_	_	_	-	2	1	1	_	-	-
	시설	38	_	_	_	-	7	15	12	4	-	-
	방송통신	2	_	_	_	_	_	1	1	_	-	-
	운전	18	_	_	_	_	4	6	4	4	-	-
	속기	2	_	_	_	_	_	1	1	_	-	-
	사무운영	3	_	_	_	_	_	_	_	3	-	-
	기계운영	1	_	_	_	_	_	_	_	1	-	-
	전기운영	2	_	_	_	_	_	_	2	_	-	-
	행정.농업	53	_	_	_	_	21	18	11	3	-	-
	행정.전산	4	_	_	_	_	1	2	1	_	_	-
	행정.사서	1	_	_	_	_	_	_	_	1	_	_
	방송통신.전산	1	_	_	_	_	_	_	_	1	_	_
	행정.시설	75	_	_	_	4	24	20	17	10	_	_
	행정.환경	5	_	_	_	_	_	2	2	1	_	_
	행정.해양수산	10	_	-	_	_	3	3	2	2	_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행정.공업	4	_	_	_	_	1	1	2	_	_	_
	86.86 환경.공업		_	_	_	_	_	·	2	_		
		4		_	_	_		2		_	_	_
	농업. 녹지	2	_				1	1	_			
	시설.녹지	1	_	_	_	_	_	1	-	_	_	_
	시설.방재안전	3	_	_	_	-	-	2	1	-	_	_
	행정.사회복지	30	_	_	_	3	11	8	3	5	_	_
	해양수산.시설	2	_	_	_	_	-	2	-	-	-	-
	행정.보건	9	_	_	_	-	1	3	3	2	-	-
	행정.보건.식품위생	1	-	-	-	-	-	1	_	_	-	_
	보건.약무	1	_	_	_	-	_	1	-	_	-	_
	보건.간호	10	-	-	-	_	2	2	5	1	-	_
	간호.의료기술	1	_	-	_	-	_	-	1	-	_	_
	행정.세무	24	_	-	_	-	7	11	5	1	_	_
	기술서기관.보건. 간호.의료기술	1	-	-	1	-	_	_	_	_	_	_
	환경.녹지	_	_	_	_	_	-	_	-	_	-	_
	환경.해양수산	1	_	_	_	_	_	_	1	_	-	_
	농업.농촌지도 농업연구	2	_	_	_	_	1	_	1	_	_	_
	행정.농업.시설	24	-	-	-	10	3	6	5	-	-	-
	행정.환경.공업	16	-	-	-	1	6	4	3	2	-	_
	행정.시설.보건	3	-	-	-	-	1	-	1	1	-	_
	환경.공업.보건	1	_	_	_	_	_	-	1	-	_	_
	행정.농업.전산	3	_	_	_	-	1	2	-	-	_	_
	행정.시설.해양수산	3	_	_	_	1	2	-	_	-	_	_
	행정.농업.해양수산	7	_	_	_	2	5	_	-	_	_	_
	행정.농업.녹지	11	_	_	_	1	3	2	2	3	_	_
	보건.간호.의료기술	16	_	_	_	_	5	6	3	2	_	_
	행정.보건.의료기술	1	_	-	-	_	1	-	-	_	-	_
	행정.농업.시설.보건	8	_	_	_	4	1	2	1	_	_	_
	행정.사회복지.간호	2	_	_	_	_	2	_	_	_	-	_
	행정.공업.시설.환경	1	_	_	_	1	_	_	_	_	-	_
	행정.공업.시설	7	_	_	_	3	1	2	_	1	_	_
	행정.사회복지.보건	27	_	_	_	_	6	7	8	6	_	_
	행정.농업.농촌지도	7	_	_	_	2	2	2	1	_	_	_
	농업.농촌지도	6	_	_	_	1	5	_	_	_	_	_
	농업.수의.농촌지도	3	_	_	_	1	1	1	_	_	_	_
	농업.녹지.시설	1	_	_	_	1	_	_	_	_	_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행정.시설.녹지	1	_	_	-	_	_	1	-	-	_	-
	행정.농업.사회복지	13	-	-	-	1	6	2	2	2	_	-
	행정.전산.방송통신	7	-	-	-	-	3	2	2	-	_	-
	행정.농업.방송통신	1	_	_	_	1	_	_	_	_	_	-
	행정.농업.세무	5	_	_	_	_	4	_	1	_	_	-
	행정.농업.녹지.사회 복지	1	_	_	_	1	_	_	_	_	_	-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_	-	_	2	2	_	_	_	_	-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1	_	_	_	1	_	_	_	_	_	-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1	_	-	-	-	_	-
	전문경력관	6	-	_	-	-	_	-	6	-	_	-
별정직	소계	1	_	_	_	_	1	_	_	_	_	_
207	비서요원	1	_	_	_	_	1	_	_	_	_	_
	소계	4	-	-	_	-	_	_	_	_	_	4
연구직	학예연구	2	_	_	_	_	_	_	_	_	_	2
	기록연구	1	_	-	-	_	_	_	-	-	_	1
	농업연구	1	_	_	_	_	_	_	_	_	_	1
지도직	소계	25	_	_	_	_	_	_	_	_	1	24
NITH	농촌지도	25	_	_	_	_	_	_	_	_	1	24

□ 본청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355	1	4	-	18	95	111	81	43	-	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351	-	4	-	18	94	111	81	43	-	_
	서기관	1	-	1	-	_	_	-	-	-	-	_
	서기관.기술서기관	3	-	3	-	_	-	-	-	-	-	_
	행정	71	-	-	-	_	18	28	19	6	-	_
	세무	8	-	-	-	_	2	3	2	1	-	_
	전산	1	_	_	_	_	_	_	1	_	_	_
	사회복지	10	-	-	-	_	2	2	1	5	-	_
	공업	4	_	_	-	_	_	1	3	-	_	_
	녹지	3	_	_	_	_	1	1	-	1	_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해양수산	8	_	_	_	_	2	3	3	_	_	_
	보건	2	_	_	-	_	_	-	2	_	-	_
	환경	4	_	_	_	_	2	1	1	_	_	_
	시설	21	-	_	-	_	6	9	4	2	-	_
	방송통신	2	-	_	_	-	_	1	1	-	-	_
	운전	13	_	_	-	_	4	3	2	4	_	_
	사무운영	1	_	_	_	_	_	_	_	1	-	_
	기계운영	1	_	_	_	_	_	_	_	1	_	_
	전기운영	1	_	_	_	_	_	_	1	_	-	_
	행정.농업	1	_	_	_	_	_	_	1	_	_	_
	행정.전산	3	_	_	_	_	1	2	_	_	-	_
	행정.사서	1	_	_	_	_	_	_	_	1	_	_
	방송통신.전산	1	_	_	_	_	_	_	_	1	-	_
	행정.시설	68	_	_	_	2	22	19	17	8	-	_
	행정.환경	2	_	_	_	_	_	2	_	_	_	_
	행정.해양수산	10	_	_	_	_	3	3	2	2	_	_
	행정.공업	2	_	_	_	_	1	_	1	_	_	_
	환경.공업	4	_	_	_	_	_	2	2	_	_	_
	농업. 녹지	2	_	_	_	_	1	1	_	_	_	_
	시설.녹지	1	_	_	-	_	_	1	-	_	-	_
	시설.방재안전	3	_	_	_	_	_	2	1	_	_	_
	행정.사회복지	21	_	_	_	3	8	6	2	2	_	_
	해양수산.시설	2	_	_	_	_	_	2	-	_	_	_
	행정.보건	2	_	_	_	_	_	1	-	1	_	_
	행정.보건.식품위생	1	_	_	_	_	_	1	-	_	_	_
	행정.세무	10	_	-	-	_	4	5	1	-	-	_
	환경.해양수산	1	_	-	-	_	-	-	1	_	_	_
	행정.농업.시설	12	_	-	_	5	1	3	3	-	-	_
	행정.환경.공업	8	_	-	_	1	3	2	1	1	_	_
	행정.시설.보건	3	_	_	-	_	1	-	1	1	-	_
	행정.시설.해양수산	3	_	-	_	1	2	-	-	_	-	_
	행정.농업.해양수산	_	_	_	-	_	-	_	_	-	-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행정.농업.녹지	1-	-	_	-	1	3	2	2	2	_	_
	행정.보건.의료기술	1	-	-	-	-	1	-	-	-	-	_
	행정.공업.시설	6	-	-	-	3	_	2	-	1	-	_
	행정.사회복지.보건	10	_	_	-	-	3	3	3	1	-	_
	농업.녹지.시설	1	_	-	-	1	_	-	-	-	-	_
	행정.전산.방송통신	7	_	-	_	_	3	2	2	-	-	_
	행정.농업.방송통신	1	_	-	_	1	_	-	-	-	-	_
별정직	소계	1	_	_	_	_	1	_	_	_	_	_
207	비서요원	1	_	-	-	-	1	-	-	-	-	_
	소계	2	_	_	_	-	_	_	_	_	-	2
연구직	학예연구	1	_	-	-	_	_	-	-	-	-	1
	기록연구	1	_	_	_	_	_	_	_	_	_	1

□ 본청(의회포함)

직렬별	지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372	1	4	-	21	98	119	84	43	_	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368	_	4	-	21	97	119	84	43	_	_
	서기관	1	-	1	-	-	_	-	-	-	_	-
-	서기관.기술서기관	3	-	3	-	-	-	-	-	-	-	-
	행정	80	-	-	-	-	20	34	20	6	-	-
	세무	8	-	-	-	-	2	3	2	1	-	-
-	전산	1	-	-	-	-	-	-	1	-	-	_
	사회복지	10	-	-	-	-	2	2	1	5	_	_
	공업	4	-	-	-	-	_	1	3	-	_	-
	녹지	3	-	-	-	-	1	1	-	1	_	-
	해양수산	8	-	-	-	-	2	3	3	-	-	-
	보건	2	-	-	-	-	-	-	2	_	-	-
	환경	4	-	-	-	-	2	1	1	-	-	-
	시설	21	_	-	-	_	6	9	4	2	_	_
	방송통신	2	-	-	-	-	_	1	1	_	_	_
	운전	15	-	-	-	-	4	4	3	4	_	-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속기	2	-	-	-	_	-	1	1	_	-	_
	사무운영	1	-	-	-	_	_	-	-	1	-	-
	기계운영	1	_	-	-	_	_	-	_	1	_	_
	전기운영	1	_	_	_	_	_	-	1	_	-	_
	행정.농업	1	_	_	_	_	_	_	1	_	_	_
	행정.전산	3	-	-	_	-	1	2	-	-	-	_
	행정.사서	1	-	_	_	-	_	_	_	1	-	_
	방송통신.전산	1	-	_	_	_	-	_	_	1	_	-
	행정.시설	70	-	_	-	4	22	19	17	8	-	-
	행정.환경	2	-	-	_	_	-	2	-	_	-	_
	행정.해양수산	10	-	-	-	-	3	3	2	2	-	_
	행정.공업	2	-	-	_	_	1	-	1	_	-	-
	환경.공업	4	_	_	_	_	_	2	2	_	_	-
	농업. 녹지	2	_	_	_	_	1	1	_	_	_	_
	시설.녹지	1	_	_	_	_	_	1	_	_	_	_
	시설.방재안전	3	_	-	_	_	_	2	1	_	_	_
	행정.사회복지	21	_	_	_	3	8	6	2	2	_	_
	해양수산.시설	2	_	_	_	_	_	2	_	_	_	_
	행정.보건	2	_	_	_	_	-	1	_	1	_	-
	행정.보건.식품위생	1	_	_	_	_	_	1	_	_	_	_
	행정.세무	10	_	-	_	_	4	5	1	_	_	_
	환경.해양수산	1	_	_	_	_	_	-	1	_	_	_
	행정.농업.시설	14	_	-	_	6	2	3	3	_	_	_
	행정.환경.공업	8	_	-	_	1	3	2	1	1	_	_
	행정.시설.보건	3	-	-	_	_	1	-	1	1	-	_
	행정.시설.해양수산	3	-	-	-	1	2	-	-	_	-	-
	행정.농업.녹지	10	-	_	-	1	3	2	2	2	-	-
	행정.보건.의료기술	1	-	-	-	_	1	_	-	_	-	-
	행정.공업.시설	6	-	-	-	3	-	2	-	1	-	-
	행정.사회복지.보건	10	-	_	-	_	3	3	3	1	-	_
	농업.녹지.시설	1	-	-	-	1	-	_	-	-	-	_
	행정.전산.방송통신	7	-	-	-	_	3	2	2	_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_	_	_	1	_	_	_	_	_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ᇤᅯᅱ	소계	1	-	_	-	_	1	_	-	_	_	_
별정직	비서요원	1	-	-	_	-	1	-	_	-	_	_
	소계	2	-	-	-	-	-	-	-	-	_	2
연구직	학예연구	1	-	-	-	_	_	_	-	_	_	1
	기록연구	1	-	_	_	-	_	_	_	-	_	1

□ 직속기관

		T .	I		ı	I			I	I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3/2)		NII.	
합계		139	-	_	1	5	21	31	48	7	1	25
일반직	소계	113	_	_	1	5	21	31	48	7	_	-
	농업	5	_	_	_	_	_	3	2	_	_	-
	수의	2	_	_	_	_	_	2	_	-	_	-
	보건	11	_	_	_	-	_	2	8	1	_	-
	의무	1	_	_	_	1	_	_	_	-	_	-
	간호	6	-	_	_	-	_	1	5	-	_	-
	보건진료	12	-	_	_	-	2	4	6	-	_	-
	의료기술	7	-	-	-	-	_	2	5	-	_	-
	운전	1	-	_	-	-	_	1	_	-	_	-
	사무운영	1	-	-	-	-	_	-	-	1	_	-
	행정.농업	7	-	-	-	-	-	2	3	2	-	-
	행정.보건	2		-	-	-	1	-	1		-	-
	보건.약무	1		_	-	-	-	1	-		_	-
	보건.간호	8	-	-	-	-	2	1	4	1	_	-
	간호.의료기술	1	-	-	-	-	_	-	1	-	_	-
	기술서기관.보건.	1	_	_	1	_	_	-	_	_	_	_
	간호.의료기술	'			'							
	농업.농촌지도 농업연구	2	_	_	_	_	1	-	1	_	_	-
	행정.농업.시설	6	_		_	_	2	3	1	_	_	_
	행정.환경.농업	2	_	_	_	_	1	-	1	_	_	-
	행정.농업.전산	2	_	_	_	-	1	1	_	-	_	-
	보건.간호.의료기술	16	_	ı	_	_	5	4	2	2	_	-
	행정.농업.농촌지도	9	-	_	-	2	2	3	2	-	_	-
	농업.농촌지도	4	-	-	-	1	3	-	_	_	-	-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농업.수의.농촌지도	3	-	-	-	1	1	1	_	-	-	-
	전문경력관	6	_	_	_	_	-	_	6	-	-	-
M J XI	소계	1	-	-	-	-	-	_	_	-	-	1
연구직	농업연구	1	-	-	-	-	-	_	-	-	-	1
지도직	소계	25	-	_	_	-	-	_	_	-	1	24
	농촌지도	25	_	_	_	_	_	_	_	-	1	24

□ 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41	-	_	-	3	8	12	12	5	-	1
일반직	소계	40	-	_	-	3	8	12	12	5	-	-
	행정	5	-	-	-	_	-	2	3	-	-	-
	김	4	-	-	-	_	_	1	2	1	-	-
	시설	3	-	-	_	_	1	2	-	-	-	-
	운전	2	-	-	_	_	_	1	1	-	-	-
	전기운영	1	-	-	-	_	-	_	1	-	-	-
	행정.농업	4	-	-	-	-	2	2	_	-	-	-
	행정.시설	5	_	_	_	_	2	1	_	2	_	-
	행정.환경	1	_	_	_	_	_	_	1	_	_	-
	행정.공업	2	_	_	_	_	_	1	1	_	_	-
	행정.보건	_	_	_	_	_	_	_	_	_	_	-
	행정.농업.시설	2	_	_	_	2	_	_	_	_	_	-
	행정.환경.공업	6	_	_	-	-	2	1	2	1	_	-
	환경.공업.보건	1	_	_	_	_	_	_	1	_	_	-
	행정.농업.녹지	1	-	_	-	-	-	-	_	1	-	-
	행정.공업.시설.환경	1	_	_	_	1	_	_	_	_	_	_
	행정.공업.시설	1	_	_	_	_	1	_	_	_	_	_
	행정.시설.녹지	1	-	_	-	_	-	1	_	_	_	_
연구직	소계	1	-	-	_	_	-	_	_	-	_	1
277	학예연구	1	_	_	_	_	_	_	_	_	_	1

□ 읍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94	_	_	_	14	51	51	51	27	_	_
일반직	소계	194	_	_	_	14	51	51	51	27	_	_
	행정	9	_	_	_	_	_	4	3	2	_	_
	세무	1	-	_	-	-	1	_	_	_	_	_
	사회복지	23	_	_	_	_	_	6	9	8	_	_
	시설	14	-	-	-	-	-	4	8	2	-	_
	사무운영	1	-	-	-	-	_	_	-	1	_	_
	행정.농업	41	_	-	-	-	19	14	7	1	_	-
	행정.전산	1	-	-	-	-	-	_	1	_	-	_
	행정.시설	-	-	-	-	-	_	_	-	_	_	-
	행정.환경	2	-	-	_	-	_	_	1	1	_	_
	행정.사회복지	9	-	-	-	-	3	2	1	3	_	-
	행정.보건	5	-	-	-	-	_	2	2	1	_	-
	행정.세무	14	_	-	-	-	3	6	4	1	_	_
	행정.농업.시설	5	_	-	-	2	1	_	2	_	_	-
	행정.환경.공업	2	_	-	_	_	1	1	_	_	_	_
	행정.농업.전산	1	_	-	-	-	_	1	_	_	_	_
	행정.농업.해양수산	7	-	-	-	2	5	_	_	_	_	-
	보건.간호.의료기술	7	_	-	-	_	_	3	4	_	_	_
	행정.농업.시설.보건	8	_	-	-	4	1	2	1	_	_	_
	행정.사회복지.간호	2	_	-	-	-	2	_	_	_	_	-
	행정.사회복지.보건	17	_	-	-	_	3	4	5	5	_	_
	행정.농업.사회복지	13	_	-	_	1	6	2	2	2	_	-
	행정.농업.세무	5	-	_	_	_	4	_	1	_	_	_
	행정.농업.녹지.사회 복지	1	_	_	_	1	_	_	_	_	_	_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_	_	_	2	2	_	_	_	_	_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1	_	_	_	1	_	-	-	-	_	_
	행정.공업.농업.시설	1	-	_	_	1	_	_	_	_	_	_

□ 군정혁신담당관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	-	_	1	5	6	4	1	-	_
일반직	소계	17	-	-	_	1	5	6	4	1	-	_
	행정	10					2	5	3			
	행정.시설	4				1	2	1				
	행정.시설.보건	3					1		1	1		

□ 기획감사담당관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	_	-	1	6	6	3	1	-	-
정무직		-	_									
일반직	소계	17	-	_	-	1	6	6	3	1	-	-
	행정	13					4	5	3	1		
	세무	1					1					
	시설	1						1				
	행정.농업	-										
	행정.시설	_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	1				1						

□ 행정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8	1	2	-	1	8	7	5	3	-	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25	-	2	-	1	7	7	5	3	-	-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	11					4	4	2	1		
	전산	1							1			
	방송통신	2						1	1			
	사무운영	1								1		
	행정.농업	0										
	행정.전산	2					1	1				
	방송통신.전산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1	1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별정직	소계	1	-	-	-	_	1	-	-	_	-	-
234 	비서요원	1					1					
연구직	소계	1	-	-	-	_	-	_	-	_	-	1
274 	기록연구	1										1

□ 재무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31	-	-	_	1	8	12	7	3	-	_
일반직	소계	31	_	-	_	1	8	12	7	3	_	_
	행정	7					1	4	2			
	세무	7					1	3	2	1		
	공업	1							1			
	운전	6					3		1	2		
	행정.세무	9					3	5	1			
	행정.농업.시설	1				1						

□ 주민생활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_	_	_	1	5	4	3	4	_	_
일반직	소계	17	-	-	_	1	5	4	3	4	-	_
	사회복지	4					1			3		
	행정.사회복지	9				1	3	3	2			
	행정.사회복지.보건	4					1	1	1	1		

□ 복지지원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4	-	-	-	1	4	5	2	2	-	-
일반직	소계	14	_	-	-	1	4	5	2	2	_	_
	행정	1						1				
	사회복지	3					1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6				1	2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1	1	1			

□ 교육청소년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5	_	-	_	1	4	4	4	2	-	_
	소계	14	-	-	_	1	4	4	3	2	-	_
	행정	2						1	1			
	사회복지	3						1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6				1	3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1	1	1			

□ 민원봉사과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연구
직렬별			ОТП	78	4 20	78	(가군)	(나군)	(다군)) 	지도관	지도사
합계		24	_	_	_	1	7	7	6	3	_	-
일반직	소계	24	_	_	_	1	7	7	6	3	_	_
	행정	3					1	1	1			
	보건	2							2			
	시설	1							1			
	행정.시설	12					5	3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문화관광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1	_	1	_	1	5	5	5	3	-	1
일반직	소계	20	_	1	_	1	5	5	5	3	-	-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	7					2	2	2	1		
	전기운영	1							1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10				1	3	3	2	1		
	행정.보건	_										
연구직	소계	1	_	_	_	_	_	_	_	_	_	1
	학예연구	1										1

□ 체육진흥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5	_	_	_	1	4	5	3	2	_	_
일반직	소계	15	-	_	-	1	4	5	3	2	-	-
	행정	4					1	1	1	1		
	공업	2						1	1			
	행정.시설	5					2	2	1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	3				1		1		1		

□ 환경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6	_	_	_	1	6	10	5	4	-	-
일반직	소계	27	-	-	_	1	6	10	6	4	-	-
	환경	4					2	1	1			
	운전	7					1	3	1	2		
	기계운영	1								1		
	행정.농업	_							_			
	행정.환경	2						2				
	환경.공업	4						2	2			
	행정.환경.공업	8				1	3	2	1	1		

□ 해양수산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3	-	_	-	1	6	8	6	2	-	-
일반직	소계	23	-	-	-	1	6	8	6	2	-	-
	해양수산	8					2	3	3			
	행정.해양수산	10					3	3	2	2		
	해양수산.시설	2						2				
	환경.해양수산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1	1					

□ 녹지공원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4	-	-	_	1	4	4	2	3	-	-
일반직	소계	14	-	-	_	1	4	4	2	3	-	_
	녹지	3					1	1		1		
	농업. 녹지	2					1	1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7				1	2	1	1	2		

□ 일자리경제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0	-	1	_	1	5	6	5	2	_	-
일반직	소계	20	-	1	-	1	5	6	5	2	-	-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	9					2	3	2	2		
	행정.농업	-										
	행정.시설	6					2	2	2			
	행정.공업	2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안전관리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4	-	_	_	1	4	3	5	1	_	-
일반직	소계	14	-	_	_	1	4	3	5	1	-	-
	행정	1					1					
	시설	2					1	1				
	행정.농업	_										
	행정.시설	4					1	1	2	-		
	시설.방재안전	2							2	1		
	행정.농업.시설	1				1		-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1	1			

□ 도시교통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0	-	-	-	1	5	6	5	3	-	-
일반직	소계	20	_	-	_	1	5	6	5	3	-	_
	행정	2						1	1			
	시설	6					3	1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0					2	3	3	2		
	행정.공업.시설	1				1						

□ 건설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_	_	_	1	4	6	4	2	_	-
일반직	소계	17	_	_	_	1	4	6	4	2	_	-
	행정	1							1			
	공업	1							1			
	시설	4					1	2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7					2	3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 건축개발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2	_	_	-	1	5	7	7	2	-	-
일반직	소계	22	_	_	-	1	5	7	7	2	-	-
	시설	7					1	4	2			
	행정.시설	8					3	1	2	2		
	행정.농업.시설	3						1	2			
	행정.농업.녹지	3					1	1	1			
	농업.녹지.시설	1				1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75	_	_	_	4	11	15	16	3	1	25
일반직	소계	49	_	_	-	4	11	15	16	3	_	_
	농업	5	_	_	-	_	_	3	2	_	_	_
	수의	2	_	_	-	-	-	2	-	_	_	-
	사무운영	1	_	_	-	_	_	_	ı	1	_	_
	행정.농업	7	_	_	_	_	_	2	3	2	_	_
	농업.농촌지도 농업연구	2	_	_	_	_	1	_	1	_	_	_
	행정.농업.시설	6	-	-	-	-	2	3	1	-	-	_
	행정.농업.전산	2	_	_	-	_	1	1	-	_	_	_
	행정.농업.농촌지도	9	_	_	_	2	2	3	2	-	_	_
	농업.농촌지도	4	-	_	-	1_	3	-	ı	-	_	_
	농업.수의.농촌지도	3	_	_	_	1	1	1	-	_	_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기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전문경력관	6	_	_	_	_	_	_	6	_	_	-
연구직	소계	1	-	-	-	-	-	-	-	-	-	1
	농업연구	1	_	_	_	-	_	_	_	_	_	1
지도직	소계	25	_	_	_	_	-	_	_	_	1	24
	농촌지도	25	_	_	_	_	_	_	_	_	1	24

□ 농촌정책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4	_	_	_	2	5	6	8	2	_	1
일반직	소계	23	-	_	_	2	5	6	8	2	_	-
	농업	2						2	_			
	사무운영	1						-		1		
	행정.농업	3						1	1	1		
	행정.농업.시설	5					2	2	1			
	행정.농업.전산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2	1					
	농업.농촌지도	1					1					
	전문경력관	6							6			
지도직	소계	1	-	_	-	_	_	-	_	_	_	1
	농촌지도	1										1

□ 농업기술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	-	-	-	1	2	2	-	1	11
일반직	소계	5	_	_	_	_	1	2	2	-	_	-
	농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1	1				
지도직	소계	14	_	_	_	_	_	_	_	_	1	13
시도역	농촌지도	12									1	11

□ 축산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6	-	-	-	1	4	5	3	1	-	2
일반직	소계	14	-	-	-	1	4	5	3	1	-	-
	농업	2						1	1			
	수의	2						2				
	행정.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환경.공업	2					1		1			
	농업.농촌지도	2					2					
	농업.수의.농촌지도	3				1	1	1				
지도직	소계	2	_	_	_	_	-	_	-	_	_	2
	농촌지도	2										2

□ 농식품유통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8	_	-	-	1	1	2	3	-	-	11
일반직	소계	7	_	_	_	1	1	2	3	_	-	-
	농업.농촌지도 농업연구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4						2	2			
	농업.농촌지도	1				1						
연구직	소계	1	-	-	-	-	-	-	_	-	-	1
	농업연구	1										1
지도직	소계	10	_	_	_	-	_	_	_	_	-	10
	농촌지도	10										10

□ 보건소

지급별 지렬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64	_	_	1	1	10	16	32	4	_	-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일반직	소계	64	-	_	1	1	10	16	32	4	-	_
	보건	11						2	8	1		
	의무	1				1						
	간호	6						1	5			
	보건진료	12					2	4	6			
	의료기술	7						2	5			
	운전	1						1				
	행정.보건	2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8					2	1	4	1		
	간호.의료기술	1							1			
	기술서기관.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3					5	4	2	2		

□ 의회사무과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7	-	-	-	3	3	8	3	-	-	-
일반직	소계	17	-	-	-	3	3	8	3	-	-	_
	행정	9					2	6	1			
	운전	2						1	1			
	속기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1	1					

□ 관광지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2	_	_	_	1	2	4	4	1	_	_
일반직	소계	12	-	_	-	1	2	4	4	1	_	-
	행정	1						1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공업	1							1			
	운전	2						1	1			
	전기운영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										
	행정.농업.시설	1				1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1	-	-	-	1	2	4	2	1	-	1
일반직	소계	10	-	-	-	1	2	4	2	1	-	-
	행정	2						1	1			
	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시설.녹지	1						1				
연구직	소계	1	-	-	-	_	_	-	_	-	-	1
	학예연구	1										1

□ 상하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8	_	_	_	1	4	4	6	3	_	-
일반직	소계	18	_	-	-	1	4	4	6	3	-	_
	행정	2							2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공업	2						1		1		
	시설	3					1	2				
	행정.시설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공업	6					2	1	2	1		
	행정.시설.보건	-										
	환경.공업.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1						

□ 고성읍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28	-	-	-	1	7	8	8	4	-	_
일반직	소계	28	-	-	-	1	7	8	8	4	-	-
	행정	3						2	1			
	세무	1					1					
	사회복지	5						1	1	3		
	시설	1						1				
	행정.농업	6					3	1	2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세무	3						1	2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 삼산면

직급별 직렬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2	-	_	-	1	4	2	3	2	-	-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일반직	소계	12	-	-	-	1	4	2	3	2	-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3					1	1		1		
	행정.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 하일면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연구
직렬별					. 30		(가군)	(나군)	(다군)		지도관	지도사
합계		13	_	_	_	1	3	4	3	2	_	-
일반직	소계	13	_	_	_	1	3	4	3	2	_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1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 하이면

	직급별	합계	정무직	1 ⊒	4~5급	E	6급	7급	8급	∩⊐	연구	연구
직렬별		알게	Ø∓4	4급	4~5ਜ਼	5급	(가군)	(나군)	(다군)		지도관	지도사
합계		14	-	_	_	1	4	3	3	3	_	-
일반직	소계	13	_	_	_	1	4	3	2	3	_	_
	사회복지	2							1	1		
	시설	1						1				
	사무운영	1								1		
	행정.농업	1					1					

тган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연구
직렬별							(가군)	(나군)	(다군)		지도관	지도사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 상리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2	_	_	_	1	3	3	4	1	-	-
일반직	소계	12	-	-	-	1	3	3	4	1	-	-
	사회복지	2							1	1		
	시설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4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 대가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2	-	-	-	1	3	2	5	1	-	-
일반직	소계	12	-	-	-	1	3	2	5	1	-	-
	행정	1								1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4					2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 영현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1	_	_	_	1	3	3	3	1	_	-
일반직	소계	11	_	_	_	1	3	3	3	1	_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 영오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2	-	-	-	1	3	3	3	2	_	-
일반직	소계	12	_	-	_	1	3	3	3	2	_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3					1	1	1			
	행정.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농업.세무	1					1					

□ 개천면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연구
직렬별		_ "		_		_	(가군)	(나군)	(다군)	_	지도관	지도사
합계		12	-	_	-	1	3	3	3	2	_	-
정무직		_										
일반직	소계	12	_	_	_	1	3	3	3	2	_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시설	_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1		1	1		
	행정.농업.세무	1					1					
	행정.농업.녹지.사회	1				1						
	복지	'				'						

□ 구만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1	-	-	-	1	3	3	3	1	-	-
일반직	소계	11	-	_	_	1	3	3	3	1	_	-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4					2	1	1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 회화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5	_	_	_	1	4	6	2	2	_	_
일반직	소계	15	_	_	_	1	4	6	2	2	_	_
	 행정	2						1	1			
	사회복지	2						1		1		
	시설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세무	1					1					

□ 마암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3	_	_	-	1	4	2	4	2	-	-
	소계	13	-	-	-	1	4	2	4	2	-	-
	행정	1								1		
	사회복지	1							1			
	시설	1							1			
	행정.농업	4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 동해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4	-	-	-	1	3	5	3	2	-	-
일반직	소계	14	-	-	-	1	3	5	3	2	_	-
	사회복지	2						1		1		
	시설	1						1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전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농업.세무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1				1						

□ 거류면

직렬별	직급별	합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가군)	7급 (나군)	8급 (다군)	9급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합계		15	-	-	-	1	4	4	4	2	-	-
일반직	소계	15	-	_	_	1	4	4	4	2	-	-
	행정	2						1	1			
	사회복지	2						1		1		
	시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환경.공업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고성군 공고 제2022-25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0. 고 성 군 수

1. 폐지이유

- 가. 각급 학교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 나. 이 규칙 시행 후 현재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임용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 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장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5,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ス	방공되	무원법
-----	-----	-----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명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

- 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시기등) ①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 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 2. 학업을 정지한 때
 -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1. 사망한 때
 -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

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용시험등)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충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합격한 장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도내의 다른 임용권자에게 임용추 천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관과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x 의무복무윌수 — 근무윌수 의무복무윌수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subset) 성명(단체명):								
\subset) 주 소:								
\subset) 전화번호:								
\subset) 의견 내용(찬·	반 의	견과 1	그 이유)					
	폐지안		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